

의안번호	2214018
의 회 인	민형배의원
회 답 일	2025. 12. 15.
추계번호	25C5955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5조(영화 필름등 및 비디오 테이프 등의 제출)	한국영상자료원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디오물(온라인비디오물을 포함한다)을 선정하여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·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, 온라인비디오물의 디지털파일(이하 “비디오테이프등”이라 한다)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(제3항 신설) 한국영상자료원은 비디오테이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, 이 경우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함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5조(영화 필름 및 비디오 테이프 등의 제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비디오테이프등의 보존에 따른 보상(안 제59조제2항)

- 개정안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디오테이프등에 대하여 제출을 받고, 그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

-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그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, 시행령에는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¹⁾ 현 시점에서 보존대상이 되는 비디오물등의 수량과 그 보상비용을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한국영상자료원의 영화필름등의 제출과 관련한 2025년, 2026년(안) 예산은 다음과 같음

【표】 영화필름등의 제출 관련 예산 편성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년	2026년(안)
제출보상비 지급	153	153
제출용 하드디스크 구입	1	1
제출 디지털시네마 온라인전송시스템 운영	110	110
디지털시네마 검수용 소모품 구입	1	1
디지털시네마 검수시스템	59	56
제출직제 처리 용역 ²⁾	72	60
합계	396	381

주: 단수 조정 등으로 합계액이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1) **시행령 제12조(영화필름등의 제출)**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화의 원판필름·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(이하 "영화필름등"이라 한다)을 제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>
 -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영화를 수입하거나 제작을 완료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서류에 영화필름등을 첨부하여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10.30.>
 - ③ 한국영상자료원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영화필름등의 제작이나 수입에 들어간 비용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는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을 기재한 보상청구서(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)를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영상 오류 검수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관련 장비 사용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